

행정사무감사계획서

(도시건설위원회)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,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 합목적적이고 능률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,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'98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감사기간

1997. 11. 26. (수) ~ 12. 2 (화) (7일간)

3.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

가. 대상기관 :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

- 도시정비국(주택과, 도시정비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건축과)
- 건설국 (건설관리과, 토목과, 치수과, 공원녹지과)
- 각동사무소

나. 사무의범위: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내의 자치구사무

4. 감사반의 편성

- 감사총괄 :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

(가나다순)

위원장	간 사	감 사 위 원	전문위원	직 원
문종준	이일희	권혁필. 김명환. 박정호. 손병욱. 안주영. 유남열. 조용호. 조길형. 최재웅	유제한	사무국 직원2 속기사1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시	감사장소	감사대상	비 고
11.26(수)	제3감사장	주 택 과 도시정비과	필요시 현장확인
11.27(목)	”	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	
11.28(금)	”	건 축 과	
11.29(토)	”	건설관리과 토 목 과	
11.30(일)	----- 공 휴 일 -----		
12. 1(월)	”	치 수 과 공원녹지과	
12. 2(화)	”	강 평	필요시 현장확인

※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
6. 감사요령

대 상	감사방법	주요감사착안사항	비 고
도시정비국 건 설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황보고청취 ○질의및답변 ○서류및현지확인 (필요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· 주택관리업자등록(변경 등록) 및 지도감독 · 전월세용자금 지원관리 ·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· 시영주택, 재개발아파트의 용자금 현황과 채 납상황 ·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· 관내 무허가건설 및 위험 건축물 상황(대책 및 조치사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출석관계공무원 - 소관국장 및 관계공무원

대 상	감사방법	주요감사착안사항	비 고
도시정비국 건 설 국	◦현황보고청취 ◦질의및답변 ◦서류및현지확인 (필요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서 접수 상황과 처리 사항 ·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와 철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·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·허가에 관한 사항 · 도시, 재개발 사업의 세부사업 운영 관계 ·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· 옥외 광고업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· 무허가 옥외광고물 현황과 처리대책 · 교통기동반 운영 및 교통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·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업체 현황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· 사업용 차량 부대시설(차고지)인허가 업무 · 버스, 마을버스, 택시, 화물업체의 사업면허 현황과 이에 따른 관련 사항 · 자동차운수사업법(버스, 전세버스, 택시, 화물 <특수화물>, 렌트카)에 대한 지도단속과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· 자동차 정비업체 허가 및 지도감독(허가적법한가 등) ·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 · 주차장특별회계 확인, 과태료 수입 확인 · 주차장설치,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· 주차단속 민원접수상황과 처리전말 · 관내 유료·무료 주차장 운영상황 ·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·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자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· 건축사무소관리 및 건축사보 지도감독 · 위법건축물에 관한 사항(현황및조치) · 건축허가및건축물 사용검사, 준공검사 ·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·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(현황 및 미준공사유) · 일반건축물의위험건물, 위험시설 등 안전에 관한 사항 · 도로사용허가상황과 점용료 부과·징수상황 · 하천 구거,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부과·징수상황 ·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· 당해연도 토지수용 사용 및 보상 	

7. 감사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 - 위원장(감사반장)
- 위원장 인사
 -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
 -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
- 선서
- 국장인사 - 간부소개
- 현황보고 - 감사대상 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
- 질의,답변 - 개별 및 일문일답식 감사
- 서류 및 현장확인 - 관계인 출석, 증언, 의견청취
- 감사결과 강평
- 감사종료

8.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가.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997년도 업무계획서
- 1997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
- 1997년도 3,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
- 1997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
- 1997년도 각종 민원(진정·청원·기타)접수처리부
-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
나. 제출부수 : 15부

다. 감사요구자료

-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'97.1월 이후의 것을 작성
- 각 위원회별로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 보고

라. 제출처 :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및 보고

가. 일일보고

-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

나. 감사결과]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